

##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교규칙

장		조항		내용
장번호	명칭	조항	명칭	
제1장	총칙			
		제1조	목적	이 학교규칙(이하 '학칙'이라 한다)은 초·중등교육법 (이하 '법'이라 한다) 제8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'시행령'이라 한다) 제9조에 의거 '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'(이하 '본교'라 한다)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		제2조	교육목표	본교는 교육기본법, 초·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실용음악에 관한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		제3조	위치	본교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8가길 8에 둔다.
제2장	수업연한			
		제4조	수업연한	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.
제3장	학년, 학기 및 휴업일			
		제5조	학년 및 학기	<p>학년 및 학기운영은 대안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.</p> <p>①학년도는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</p> <p>②학년은 이를 두학기로 나눈다.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,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</p>
		제6조	휴업일	<p>①휴업일은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공서의 공휴일</li> <li>2. 개교기념일 (9월11일)</li> <li>3. 하계휴가</li> <li>4. 동계휴가</li> <li>5. 학년말 휴가</li> </ol> <p>②제1항 1~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.</p> <p>③제1항 각 호 외에 비상 재해,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장의 권한에 따라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</p> <p>④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이 등교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⑤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봉사활동 등의 실습을 과할 수 있다.</p> <p>⑥제1항 각 호 외에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.</p>
제4장	학과 학급수 및 학생정원			
		제7조	학급편제	<p>①학급수는 남녀 공학으로 1학년 2학급, 2학년 2학급, 3학년 2학급, 총 6학급으로 한다.</p> <p>②학과는 실용음악과(보컬, 드럼, 베이스, 기타, 피아노, 관악, 미디작편곡, 뮤지컬의 전공)를 둔다.</p>
		제8조	학생정원	<p>①본교의 학생 정원은 총 150명으로 한다.</p> <p>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원외로 입학 및 전·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유급생</li> <li>2.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</li> <li>3. 재입학·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</li> <li>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</li> <li>5. 기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자</li> </ol> <p>③제2항 규정에 의거 정원 외로 입학 및 전·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인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기준에 의한다.</p>

장		조항		내용
장번호	명칭	조항	명칭	
제5장	입학, 전·편입학, 재입학, 휴학, 복학, 자퇴			
		제9조	입학자격	<p>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①중학교 졸업자 ②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</p>
		제10조	입학시기	<p>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①입학 시기는 매년 입학전형 오디션을 거쳐 3월 초에 입학한다. ②학생의 신입학, 전입학, 편입학, 재입학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전·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및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한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.</p>
		제11조	입학방법 등	<p>①본교의 입학방법은 학교장이 따로 공고하는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. ②본교의 신입생 입학전형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입생 선발위원회를 두며,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 ③신입생 선발시 학생은 지원하고자하는 전공을 선택한 후 본교의 입학전형절차를 통하여 입학여부가 결정이 된다.</p>
		제12조	보호자	<p>①본교 재학생의 보호자는 부모로 한다. 단 부득이한 경우에 다른 자를 보호자로 할 수 있으나 재학 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. ②보호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
		제13조	서약서 및 보증인	<p>입학(전·재·편입학 포함)을 허가받는 자는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①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. ②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. ③보증인, 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,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④학교장이 부 보증인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.</p>
		제14조	재입학	<p>①본교를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할 수 있다. ②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.</p>
		제15조	전·편입학	<p>①본교에 전·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. ②본교에 전·편입학 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자료(원본)와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및 입력하지 못한 각종 보조부 자료(성적, 월별 출결상황 등), 건강기록부, 봉사 활동 및 특별 활동 평가 기록부 등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③본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해당학년에 수학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. ④전·편입학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</p>

장		조항		내용
장번호	명칭	조항	명칭	
		제16조	귀국 학생 등의 입학, 전학 및 편입학	<p>①외국에서 귀국한 학생, 외국인 학생 또는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 및 편입학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.</p> <p>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입학·전학 또는 편입학 허가를 받은 자의 학년배정은 외국 정규학교의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, 우리나라 학제(12학년제)에 맞추어 계산하되, 외국에서 유치원, 어학연수(ESL), 개인학습(가정교사)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</p> <p>③귀국자 대상 입학 및 편입학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</p>
		제17조	휴학 및 복학	<p>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</p> <p>②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2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.</p> <p>③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④휴학자의 복학은 다음 학년도 휴학 일 이전에 복학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 당해 학년도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 복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,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를 원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⑤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.</p> <p>⑥복학하려는 자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
		제18조	자퇴	학생이 스스로 퇴학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의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제4장	교육과정, 수업일수 및 시험			
		제19조	교육과정	<p>①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·운영지침을 바탕으로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·운영하되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.</p> <p>②계절학기수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교육과정과 운영방안 등에 관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.</p>
		제20조	교육과정위원회	<p>①본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각 학년 및 전공별 교육과정 편성</li> <li>2. 학칙에 정해지지 않은 체험활동의 운영 및 인정기간</li> <li>3.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③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④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, 위원장은 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⑤위원은 본교 교사, 학부모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</p> <p>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(또는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)</p>
		제21조	수업일수	<p>①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②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제의 실시,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한다.</p>

장		조항		내용
장번호	명칭	조항	명칭	
		제22조	수업시간 및 운영	수업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①수업이 시작되는 시각은 오전9시 정시로 하며, 끝나는 시간은 시간표에 정해진 수업종료 시간을 따른다.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업시각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		제23조	고사 · 학업성적평가	①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간 학사 일정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해 정기고사를 학기별로 실시한다. ②각 교과에의 평가는 각 교과의 특수성에 맞게 실시한다. ③본교 학생의 학업성적 평가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제6장	수료 및 졸업			
		제24조	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	①학교장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성적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.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 ③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해 졸업장을 수여한다.
		제25조	조기진급 및 조기졸업	본교는 학교 특성상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부여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.
제7장	교외체험학습			
		제26조	교외체험학습	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②교외체험학습은 본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체험학습(이하 '학교별 체험학습')과 그 이외에 학생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본교 이외의 기관(단체)이 주최·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학습(이하 '개인별 체험학습')으로 나눈다. ③개인별 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실시 2일 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며, 실시 후 7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④학교별 체험학습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. ⑤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체험학습의 경우는 학생의 희망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하되, 국외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내로 인정한다. ⑥제5항 이외의 체험활동의 운영 및 인정기간은 제20조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.
제8장	상벌			
		제28조	표창	①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, 학업이 우수한 자, 성실하고 근면성이 뛰어난 자, 선행과 효행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,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 다만, 학업우수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②학생 표창의 종류,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.
		제29조	공적심의회	①학교장은 그 소속으로 공적심의회를 두어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한다. ②공적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교내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의회 2. 교외 표창대상자 추천을 위한 공적심의회 3.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한 사항 ③공적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④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⑤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장		조항		내용
장번호	명칭	조항	명칭	
		제30조	징계	<p>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교 내의 봉사</li> <li>2. 사회봉사</li> <li>3. 특별교육이수</li> <li>4.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</li> <li>5. 퇴학처분</li> </ol> <p>②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학교 내의 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 이수, 퇴학처분으로 하며, 세부사항은 학생선도규정으로 정한다. 단,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</p> <p>③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 <p>④ 학교장은 학생징계를 위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·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 단,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.</p> <p>⑥ 학생생활지도 및 징계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</p>
		제31조	징계 외의 지도 등	<p>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훈육·훈계 등의 지도를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구두주의</li> <li>2. 격리조치</li> <li>3. 상담지도</li> <li>4. 특별과제부여</li> </ol> <p>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훈육 훈계의 지도는 도구,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, 지도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,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학생들의 징계 외의 지도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</p>
		제32조	퇴학처분	<p>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</li> <li>2.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</li> <li>3.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</li> </ol> <p>②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,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학교에서 최종 퇴학 조치된 자는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		제32조	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	<p>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(이하 "자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</li> <li>2. 피해학생의 보호</li> <li>3.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</li> <li>4.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</li> <li>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③ 자치위원회는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④ 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</p>
		제33조	학생생활교육위원회	<p>① 본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외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.</p> <p>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 위원은 본교 교원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</p> <p>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/p>

장		조항		내용
장번호	명칭	조항	명칭	
제9장	학생자치활동			
		제34조	학생활동지원	학교장은 학생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자치활동을 권장·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적인 학생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.
		제35조	총학생회	<p>① 본교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를 둔다.</p> <p>② 총학생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회장 1명 (3학년)</li> <li>2. 학생부회장 1명 (2학년)</li> <li>3. 각 학급 반장, 각 학과 과대표 등</li> </ol> <p>③ 총학생회에는 대의원회와 분야별 기능을 담당할 부서를 둔다.</p> <p>④ 총학생회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의 복지 증진에 관한 활동</li> <li>2. 학교 행사의 기획·운영에 관한 활동</li> <li>3.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제시 활동</li> <li>4. 학생자치활동 예산의 운영에 관한 활동</li> <li>5. 학생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참석 및 의견 제시 활동</li> <li>6. 학교 전통의 정립, 지역사회와 학생 참여에 관한 활동</li> <li>7. 각종 봉사 활동</li> <li>8.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</li> </ol> <p>⑤ 총학생회 조직, 임원의 선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</p>
제10장	수업료 등의 징수			
		제36조	수업료 및 입학금	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본 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.
		제37조	수업료 감면 기준	삭제
		제38조	기타 비용 징수	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.
		제39조	수업료 등의 반환	수업료 등의 반환사유 및 기준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.
제11장	학교규칙 개정			
		제40조	학교규칙 개정 절차	<p>①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규정은 상위법의 개정과 학교장이 개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개정한다.</p> <p>②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 개정이유, 주요내용,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예고문을 학교홈페이지, 학교신문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학생, 교직원, 학부모는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학교장은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 탑재,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 개정 이유, 주요 내용,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예고문을 학교 홈페이지, 학교 신문 등을 통해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⑤ 학교장이 제안한 학칙 개정안은 학부모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, 공포 한다.</p>
		제41조	학교규정 제·개정 절차	①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규정의 제정 및 개정시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, 학교생활규정 제정·개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부칙(2008.12.23)				
		제1조	시행일	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10.02.25)				
		제1조	시행일	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12.03.09)				
		제1조	시행일	이 학칙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				<p>①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 이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.</p>
부칙(2015.03.01)				
		제1조	시행일	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				<p>①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 이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.</p>

장		조항		내용
장번호	명칭	조항	명칭	
부칙(2016.05.15)				
		제1조	시행일	이 학칙은 201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				①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이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.
부칙(2016.06.27)				
		제1조	시행일	이 학칙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				①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이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.
부칙(2020.10.23)				
		제1조	시행일	이 학칙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				①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이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장이 정한다.
부칙(2021.8.12)				
		제1조	시행일	이 학칙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				①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이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장이 정한다.